

K3

Session

제조물 책임(PL)법과 정부대책

지건중 사무관 (산업자원부)

2002. 7. 1. 시행

제조물책임(PL)법과 정부대책

2002. 9.

- 목 차 -

I. 제조물책임(PL)법 개요	1
1. 제조물책임법이란?	
2. 민법과 손해배상책임 요건 비교	
3. PL제도와 리콜제도의 비교	
II.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	2
1. 입법 추진 경과	
2. 도입배경	
3. 주요내용	
III. 정부(산업자원부)의 PL대책	9
1. 추진 경과	
2. 그 동안 추진실적	
3. 향후 계획	
IV. 기업의 PL 대응방안	14
1. PL예방 대책	
2. PL방어 대책	
<참고자료>	
1. PL 주요사례	16
2. PL법 시행 이후의 동향	18
3. 제조물책임법 전문	19
4. PL 관련기관 및 단체 현황	22

I. 제조물책임법의 개요

1. 제조물책임이란?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 제조업자 등이 지는 손해배상책임

2. 민법과 손해배상책임 요건 비교

구분	민법	제조물책임법
손해배상책임 요건	제조자 등의 고의·과실	제조물의 결함
	손해의 발생	손해의 발생
	고의·과실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3. PL제도와 리콜제도의 비교

구분	제조물책임제도	리콜(Recall)제도
성격	○ 민사책임원칙의 변경	○ 행정적 규제
기능	○ 사후 손해배상책임을 통해 간접적인 소비자 안전 확보	○ 사전 제품회수를 통해 예방적, 직접적인 소비자 안전 확보
근거	○ 제조물책임법	○ 소비자보호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요건	○ 제조물의 결함 ○ 손해의 발생 ○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 제조물의 결함으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소비자보호법상 리콜제도

구 분	대 상	주요내용	위반시 벌칙
결함정보 보고 의무	제조업자 수입업자 용역제공자 대형유통업자	사업자가 자사 제품의 중대한 결 함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	과태료 · 사망관련 미보고 (3,000만원) · 심각한 신체적 부상 또는 질병, 식중독 관련 미보고(2,000 만원) · 안전기준위반 관련 미보고(1,000만원)
자발적 리콜	제조업자, 수입업자, 용역제공자, 유통업자(예외적 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리콜 실 시후 시정결과를 보고	없음
리콜 권고	시·도지사가 사 업자(제조업자, 수입업자, 용역제 공자, 유통업자) 에게 권고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 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위해성평가기관의 평가 및 청문 절차 생략	정당한 사유없이 리 콜을 거부할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사실 을 언론에 공표
리콜명령 (일반 및 긴급 리콜명령)	시·도지사가 사 업자(제조업자, 수입업자, 용역제 공자, 유통업자) 에게 명령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 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해성평가기관의 평가 및 청문 절차 거침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 벌금

II.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

1. 입법 추진 경과

- '82년 : 의원입법안 발의(김순규 의원의 26인)
- '94년 : 행정쇄신위에서 입법건의
- '96년 : 소비자보호원 주관으로 공청회 개최
- '98. 6 : 새정부 100大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
- '98.10 : 법조계, 학계, 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소보원에 설치)에서 입법초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
- '99. 3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회 상정 결정
- '99. 7 : 정부안 입법예고 (재경부, 법무부 공동)
- '99.11 : 추미애 의원 등 105인 의원입법 추진
- '99.12.16 : 국회통과, 2000.1.12 공포, 2002.7.1. : 시행

2. 도입배경

- 피해구제 원활화, 제품안전 향상 등을 통한 소비자권의 강화
 - 제품 생산과정과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제조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받는 것은 매우 어려워짐
 - 따라서 제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
 - 대부분 수출품은 타 국가에서 PL제도를 적용받는데 반해 국내소비자는 PL제도 미비로 보호받지 못하는 형평상 문제 해소
 -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 우리 기업들도 제품생산에 있어 global standard에 맞추어 무한경쟁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
- ※ 미국(63), EC지침('85), 일본(95), 중국('93), 러시아·필리핀('92)등 30여개 국에서 도입

3. 주요내용

가. 목적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 피해자의 보호 및 국민생활의 안전향상 등에 기여

* 피해자라 함은 소비자에 한정하지 않고 제3자 또는 법인 포함

나. 적용대상 제조물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동산 또는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포함

· 예, 주택의 조명시설, 배관시설, 승강기 등

* 민법상 동산의 규정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규정(제99조)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제98조)고 정의

- 완성품·부품·원재료를 불문하며, 공업제품은 물론 수공업품·예술작품도 대상

*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산물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

○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공간을 점하는 유체물(고체, 액체, 기체)

- 관리가 가능한 무체물(전기, 음향, 광선, 열, 물의 운동)

· 전기는 우리 민법에서 동산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조물에 포함

* 미국 대다수 주는 서비스로 보아 PL 적용을 부정, EC지침에서는 제조물에 포함, 일본은 동산을 유체물에 한정하기 때문에 제조물에서 제외

다. 제조물책임을 지는 제조업자

○ 제조업자·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

- 영리 또는 공익목적 여부 불문

○ 표시제조업자

-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가공·수입업자로 표시한 자 또는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 「제조원△△△」 「수입원△△△」 등의 이름을 붙인 경우

○ 공급업자(판매·대여 등)

-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판매·대여 등)한 자가 보충적 책임을 짐.
- 이 경우 공급업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 또는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때에는 책임을 면함.

라. 제조물책임과 결함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결함」의 의미

- 결함이란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함.

* 「안전성」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애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님.

○ 결함의 유형

- 「제조상의 결함」 :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 제조과정에 이물질이 혼입된 식품, 자동차에 부속품이 빠져있는 경우
- 「설계상의 결함」 :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아니한 경우(예, 녹즙기에 어린이의 손가락이 잘려 나간 경우)
- 「표시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예상되는 PL 사고사례>

구 분	예상 PL 사고사례
설계상 결함	①워크맨을 장기간 사용하던 중에 점점 귀가 난청이 되는 경우, ②자동개폐되는 문에 유아가 목이 끼여 질식사하는 경우, ③자동차운전 중 본넷트가 열려 시야를 막아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④유아가 몸을 뒤척일 때에 유모차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친 경우, ⑤TV에서 돌연 불이나 집을 전소시킨 경우
제조상 결함	①의자의 받침대가 부러지며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②통조림에 있는 이물질로 인하여 병에 걸린 경우, ③자전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축이 부러져 부상을 입은 경우, ④자동차주행 중 히타의 호스가 빠져 뜨거운 물이 실내에 들어와 화상을 입은 경우, ⑤가게에서 구입한 햄버거에 들어있는 금속이나 뼈에 입을 찢려 부상을 입은 경우
표시상 결함	①화기 근처에서 향수를 뿌리던중 돌연 발화하여 화상을 입은 경우, ②휴대용 전화를 3년간 사용한 결과 뇌종양이 생긴 경우, ③어린이가 베이비 오일을 잘못 마셔 뇌장해를 일으킨 경우, ④다 쓴 라이타를 차안에 방치했는데 폭발해 부상을 입은 경우, ⑤맥주를 계속 마시는 중에 알콜중독이 된 경우,

* 제조물책임대책 매뉴얼(2001.6. 한국PL센터)에서 발췌

마.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개발위험의 항변)
 - * 개발상의 위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연구개발이나 기술개발이 저해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
-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 * 제조자는 제조물이 기술기준이나 법률상의 안전기준에 합치하고 있다 라도 면책되는 것은 아님
- 원재료·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 면책사유가 부인되는 경우

- 제조업자의 면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후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음

바. 연대책임

-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

사. 면책특약의 제한

-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

아. 제조업자의 책임기간(소멸시효)

- 피해자가 손해와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
-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함
 -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함

자. 민법의 적용

-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함
 - * 과실책임주의에 기한 민법에 더하여 새롭게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

차. 시행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
- 적용례 : 2002. 7. 1.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 부터 적용
 - * 「공급」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거하여 최초로 자기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자에게 당해 제조물을 인도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

카. 결함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 제조물책임법은 입증책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피해자 측이 ①제조물에 결함 존재 ②손해 발생 ③손해가 결함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 최근 법원판례의 경향은 결함과 인과관계에 대하여 「사실상의 추정」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 「사실상의 추정」이라 함은 실제의 재판에 있어서 법원이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잘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해당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III. 산업자원부 PL 대책

1. 추진 경과

□ 2000. 1 : 제조물책임법제정 (2002.7월 시행)

□ 2001. 3~4 : 기업의 PL 대응 설문조사(한국표준협회)

* PL법의 인지도 24%, PL대책 추진 기업 18%

□ 2001. 9. 7 : 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 대책 마련

○ 기업의 PL인식을 새롭게하고 대응 분위기 확산

○ PL대응 종합추진체제 구축, 분야별 대책 수립추진

□ 2001. 9. 13 : PL대책협의회 구성·운영

○ 업종별단체 임원 등 20여명을 위원(위원장 차관보)으로 하는
PL대책협의회 구성

- 1차 회의('01. 9. 13) : 협의회 구성 및 산자부 대책 논의

- 2차 회의('01. 12. 20) : 기관별·업종별 추진대책 논의

- 3차 회의('02. 4. 9) : 기관별·업종별 추진상황 및 PL분쟁해결기구 설립 협의

- 4차 회의('02. 6. 26) : PL분쟁해결기구 설립 현황 점검 등

□ 2001. 9. 21 : PL전담 추진팀 설치

○ PL(제조물책임)팀을 설치하여 PL업무 전담

□ 2001. 10 - 12월 : 기관·업종별 PL세부추진대책 마련

○ 전자, 자동차 등 주요업종에 대한 PL대책 마련 추진

2. 그 동안 추진 실적

□ PL 대응 종합추진체제 구축

○ PL 대책협의회 구성(2001.9월, 위원장 차관보) · 운영

- 업종별 추진상황 및 지원기관의 추진실적 · 계획 점검 등 효율적인 PL대책 논의(분기 1회 회의)

* 업종별 PL대책반(7개) 및 중소기업 PL대책반 별도 구성 · 운영

○ 기관별 소관분야에 대한 PL대응 역할 분담

- 산업자원부 : 대책협의회, 업종별대책반 운영 등 총괄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지원 대책 추진
- 한국표준협회 · 중소기업진흥공단 : 교육, 컨설팅
- 중소기업중앙회 : PL단체보험 운영
- 업종별단체 등 : 분쟁해결기구설립, 분야별 PL대책 추진 등

□ 제조물책임 관련제도 개선

○ 공산품 및 전기용품 리콜제도 강화(2000.7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개정)

○ 공산품 및 전기용품의 검사기준을 국제기준으로 개편(2000년이후)

□ 업종별 PL분쟁해결기구(PL상담센터) 설립 · 운영

○ 전문가가 참여하여 PL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피해구제 효율화 및 제조업자의 부담 완화 도모

- 기능 : PL상담 · 알선, 분쟁조정 및 사고정보수집 · 제공
- 설립 : 총 13개 PL센터 설립 운용중

* 산자부 8개(전자제품, 자동차, 생활용품, 가스기기, 기계, 화학제품, 충전기기, 전기제품), 복지부 4개(의약품,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행정자치부 1개(소방방재 제품)

* 중소기업의 PL상담 등을 위해 중소기업PL분쟁조정위 별도 설립(중기협중앙회)

□ PL단체보험 도입 및 운영

○ 관련기관(단체)과 손해보험사가 공동 협약을 체결하여 PL단체 보험 운영하여 보험료 할인(20-30%) 도모

- 도입기관(단체) : 중기협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전기산업진흥회

* 중기협중앙회보험가입 : '00년 94건, '01년 195건 '02.1-6 218건('02.7월 528건)

□ 기업 PL대책지원 추진

○ PL대책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 2001년 18개 지역, 2002년 24개 지역

○ 홍보용 책자(리플렛 등) 제작·배포

- PL법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4,000부)

- PL법 잘알고 대비합시다(70,000부)

- 중소기업 PL대응 전략(4,000부)

- 제조물책임 가이드(50,000부)

- 사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제작 배포(2만개)

○ 중소기업제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 PL 컨설팅 비용지원('02.4-5월 100개사)

- 지방중기청 시험시설 무료개방

3. 향후 계획

□ 업종별 PL분쟁해결기구(PL상담센터) 활성화

- 독립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지도
- 센터 사무국 직원의 전문성 배양(9-10월중 전문가양성교육)
- 지자체 및 소비자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및 홍보 강화

□ 중소기업 PL대응 지원사업 지속 추진(중소기업청)

- PL 전문가 양성교육(4박5일)
 - 중소기업대상 교육비의 50% 지원
- PL대응 매뉴얼 개발·보급('02.10월 가전, 화학제품)
- PL대책 추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우대 지속추진
 - 대상 : PL전문가 양성교육 또는 컨설팅을 받은 업체
 - 중소기업정책자금 등 지원대상 선정시 가산점 부여('01.4월 이후)

□ PL 단체보험 개발 확대(업종단체 등)

- 업종별 단체보험개발 확대 및 보험가입 홍보 추진
 - PL상담센터 설립 업종을 중심으로 단체보험 개발(9~10월중)
 - 업종별세미나 등 각종 행사시 PL보험 가입 홍보(계속)

□ 대업계 홍보 및 정보제공 지속 추진

- 신문, 방송 및 업종별 PL세미나 등을 활용한 홍보
-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PL홍보 및 정보제공
 - 산업자원부, 중기청, 중기협중앙회, 중기진흥공단 홈페이지 활용

IV. 기업의 PL 대응방안

< PL법의 기업에 대한 영향 >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 소비자 보호의 충실 - 기업의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원가 부담 - 분쟁 등 인력자원의 낭비 - 신제품 개발의 지연 - 기업 이미지 실추

1. PL예방대책

○ 제조물책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 안전기준은 기업이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사항이라는 인식
- 개발단계에서 안전대응이 비용최소화의 길이라는 인식

○ 전사적으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본사, 각 공장마다 제품안전시스템 구축
- 제품안전 등에 관한 자체세부규칙과 매뉴얼 정비
- 전 사원에게 PL법의 내용·대응방안 교육

○ 제품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설계상 결함의 예방대책
- 제조상 결함의 예방대책
- 지시·경고상 결함의 예방대책

2. PL 방어대책

○ 민원상담창구의 활성화

- 사내에 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소비자가 언제든지 제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 있고,
- 클레임(배상청구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상담하는 창구를 갖추어야 한다.

○ 리콜체제의 정비

- 사고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리콜을 실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 사고 정보의 피드백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재발방지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소송대응체제 · 조기화해제도의 확립

- PL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 변호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소송대응체제를 정비하고,
- 재판외 분쟁해결기관을 활용하여 소송 전 단계에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소비자와의 화해를 모색하는 조기화해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 PL보험가입 등을 통한 위험의 분산

- PL보험가입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에 대비하여야 한다.

<참고1>

PL 주요사례

(미국사례)

평결년월 법원	피고회사 (제품)	평결 내용	사고내용과 원고의 주장
1963.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YuBa사 (다목적 전동공구)	6.5만 달러	작업중 갑자기 나무조각이 기계로부터 튀겨 나와 얼굴에 중상을 입음. 최초로 제조업자의 엄격 책임을 인정
1973. 연방항소법원	11개사 (석면)	5.8만 달러	공업용 단열처리 작업과정에서 석면 분진을 흡인하여 폐암에 걸림. 제조업자는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제품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 의무가 있음
1982. 10 연방대법원	H공업 (경자동차)	배상금 582.5만 달러	대형차와 충돌로 운전중이던 여성이 하반신불구가 됨. 충돌시의 안정성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
1982. 11 텍사스주 지방법원	Y사 (오토바이)	화해금 700만 달러	다른 차와 충돌할 때 가솔린탱크의 뚜껑이 열려 운전자는 중화상을 입어 보행불능이 됨
1983. 4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N사 (자동차)	배상금 935만 달러	뒷차에 추돌되어 후부좌석에 던져져서 척추를 다침. 운전석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
1983. 10 플로리다주 항소심	T사 (자동차)	배상금 500만 달러	추돌된 때에 연료탱크의 뚜껑이 벗겨져 3명의 자매가 불에 타 숨졌음
1984. 워싱턴주 항소심	Y사 미국법인 (오토바이)	배상금 1,000만 달러	사고로 운전자가 사지장해를 입음.
1986. 4 텍사스주 지방법원	H공업 미국 판매자회사 (1인용차)	화해금 650만 달러	1인용 차가 뒤집어져 동승자가 하반신마비가 됨. '2인 승차금지'라는 라벨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
1994. 엘라배마주 연방지방법원	다우코닝사 등 (실리콘)	화해 다우코닝사등 3사가40억달 러 기금 설립	다우코닝사 등이 제조 공급한 가슴성형용 실리콘 주머니가 파열되어 피해 - 12,000건의 소송이 제기 *1992년에 FDA는 사용제한조치, 다우코닝사는 제조중지

(일본사례)

제 품	소송가액	피 고	사건 개요	재소 시기
제설장치	5,124만엔	파이프(pipe) 가공회사	제설 장치의 결함으로 파이프 선단 부분의 눈이 녹지 않아 사용자로부터 클레임.	1996. 8
베이컨 (bacon)	95만엔	식품 제조회사	경품으로 받은 베이컨을 먹은후, 급성 위장염을 일으킴(화해).	1996. 11
학교 급식	7,770만엔	지방자치체	학교 급식에 의한 집단 식중독으로 사망.	1997. 1
성계	3,300만엔	식품수입업자와 판매업자	성계에 붙은 균이 원인으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음식점으로부터 소송(청구 기각).	1997. 2
합성세제	70만엔	제조회사	부엌용 합성세제를 사용중 손 끝 감각이 없어짐(화해).	1997. 4
주차장 리프트(lift)	1,815만엔	제조회사, 판매회사, 주차장 경영자	입체 주차장에서 리프트에 깔려 사망(메이커 이외 당사자와 화해, 메이커에 대한 항소는 취하).	1997. 5
귀 미용용품	60만엔	수입판매업자	귀 미용용품을 사용해 귀에 염증 발생(화해)	1998. 1
소프트웨어	1,170만엔	컴퓨터프로그램 개발회사와 컴퓨터리스회사	컴퓨터의 처리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어, 세금의 초과 지불 발생	1998. 6
봉합실	4,960만엔	수입판매회사	수술에 사용되어진 봉합실이 파손되어 출혈로 사망	1998. 7
한방약	8,160만엔	수입판매회사	한방약 복용후 만성 위부전 발생	1998. 10
곤약젤리	6,000만엔	제조회사	곤약젤리가 목에 걸려 사망	1998. 10
에어백	2억 1,096만엔	수입판매 회사와 수리회사	자동차의 에어백이 갑자기 튀어나와 손가락 골절	1998. 11
전기포트	2,500만엔	제조회사, 판매회사	넘치려 해서 뚜껑의 개폐 레버에 손을 대었더니 뚜껑이 떨어지고 포트가 넘어져 화상	1998. 12
베이비 슈즈 (baby shoes)	104만엔	제조회사	매직테이프(magic tape)가 떨어져 신발이 벗겨지면서 넘어짐	1999. 5

* 제조물책임법과 결함방지대책(2000년, 한국표준협회)에서 발췌

<참고2>

PL법 시행 이후의 동향 (PL상담센터 운영 현황)

□ PL 소송 동향

- '02. 8월말까지 제기된 PL소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02.7.1 이후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적용대상이 많지 않고, 또한 복잡한 소송을 꺼리는 국민정서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됨

□ PL 상담 동향

- PL법 시행후 2개월간 8개 PL상담센터에서 359건을 접수 상담
- 소비자 보다 사업자로부터의 상담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 * 사업자 263건(73%), 소비자 65건(22%)
- 사업자는 제조물책임법 내용과 대책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소비자는 품질클레임에 관한 상담이 다수를 차지

	제품사고	품질	PL센터	PL법,대책	기타	계
사업자	2(1%)	1	12(5%)	91(34%)	157(60%)	263건
소비자	9(14)	26(40%)	2(3%)	10(15%)	18(28%)	65건

□ PL 보험가입 등 동향

○ PL법시행 후 PL보험가입 급증

년도	2000	2001	'02.1~6	'02.7~8
건수	94	195	218	962

* 중기협중앙회 단체보험 가입 현황임

○ 기업의 사내 PL전문가 양성교육 신청 증가

- 일일평균 신청업체수 : 6개업체('02.6월) → 20개업체('02.7월)

제조물책임법

[법률제6109호 신규제정 2000. 01. 12.]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2·7·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시행일 2002·7·1]]

제3조 (제조물책임) ①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2·7·1]]

제4조 (면책사유)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시행일 2002·7·1]]

제5조 (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시행일 2002·7·1]]

제6조 (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는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2·7·1]]

제7조 (소멸시효 등) ①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시행일 2002·7·1]]

제8조 (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일 2002·7·1]]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 부터 적용한다.

<참고4>

PL 관련기관 및 상담센터 현황

1. PL 관련 기관

관련기관	PL 추진업무	전화번호
산업자원부	○ PL 지원시책 종합추진 ○ 공산품·전기용품 안전기준 정비(기술표준원)	(02)2110-5293 (02)509-7411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PL대책 추진	(02)503-7928
중소기업진흥공단	○ PL컨설팅, PL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02)785-6159
한국표준협회	○ PL컨설팅, PL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02)369-8276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중소기업 PL단체보험 운영	(02)2124-3084

2. PL 상담센터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상제품
전자제품PL상담센터	강남구 역삼동 648 전자회관11층	02-565-9325,6	TV, 비디오, 냉장고, 청소기 전자렌지 PC 등
자동차PL상담센터	강서구 등촌동 658 자동차회관 3층	02-3660-1874, 1890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생활용품PL상담센터	관악구 신림11동 1572-18 생활용품시험연구원 3층	02-864-8913, 856-5623(111)	완구, 가구, 라이트, 스포츠용구, 악기 등
가스기기PL상담센터	안산시 장상동 54 - 5 가스석유기기협회 4층	031-480-2985	가스보일러, 가스난 로, 가스렌지 등
기계PL상담센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기계회관 9층	02-369-7805,7	냉동공조기기, 공작기계, 건설기계, 광학기기 등
화학제품PL상담센터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 관 17층 정밀화학진흥회	02-780-8797, 784-0321	염료, 접착제, 페인트, 석유·유기화학제품
중전기PL상담센터	서초구 방배동 983-6 전기진흥회관 1층	02-581-8601~4	변압기, 송배전선, 발전 기 등 산업용전력기기
전기제품PL상담센터	서초구 염곡동 300-4 한국소비자보호원 2층	02-579-3291	전선, 조명기기, 전 열기기 등
의약품PL센터	서초구 방배1동 990-2 제약회관 3층	02-521-1303	의약품
화장품PL센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금산빌딩 907호	02-761-4204, 5	화장품
식품PL상담센터	서초구 방배동 1002-6 식품공업협회2층	02-583-8357, 585-5052(131~8)	식품
의료기기PL상담센터	서초구 서초동 1362-16 선영빌딩 1층	02-586-7404~6	의료기기, 의료용구
소방·방재제품PL센터	용인시 기흥읍 지곡리 136 한국소방검정공사 연구1동	031-289-2980	소화기, 방염제품 등
중소기업제조물책임 분쟁조정위원회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5층	02-2124-3080 ~6	중소기업관련 PL분 쟁 상담 등